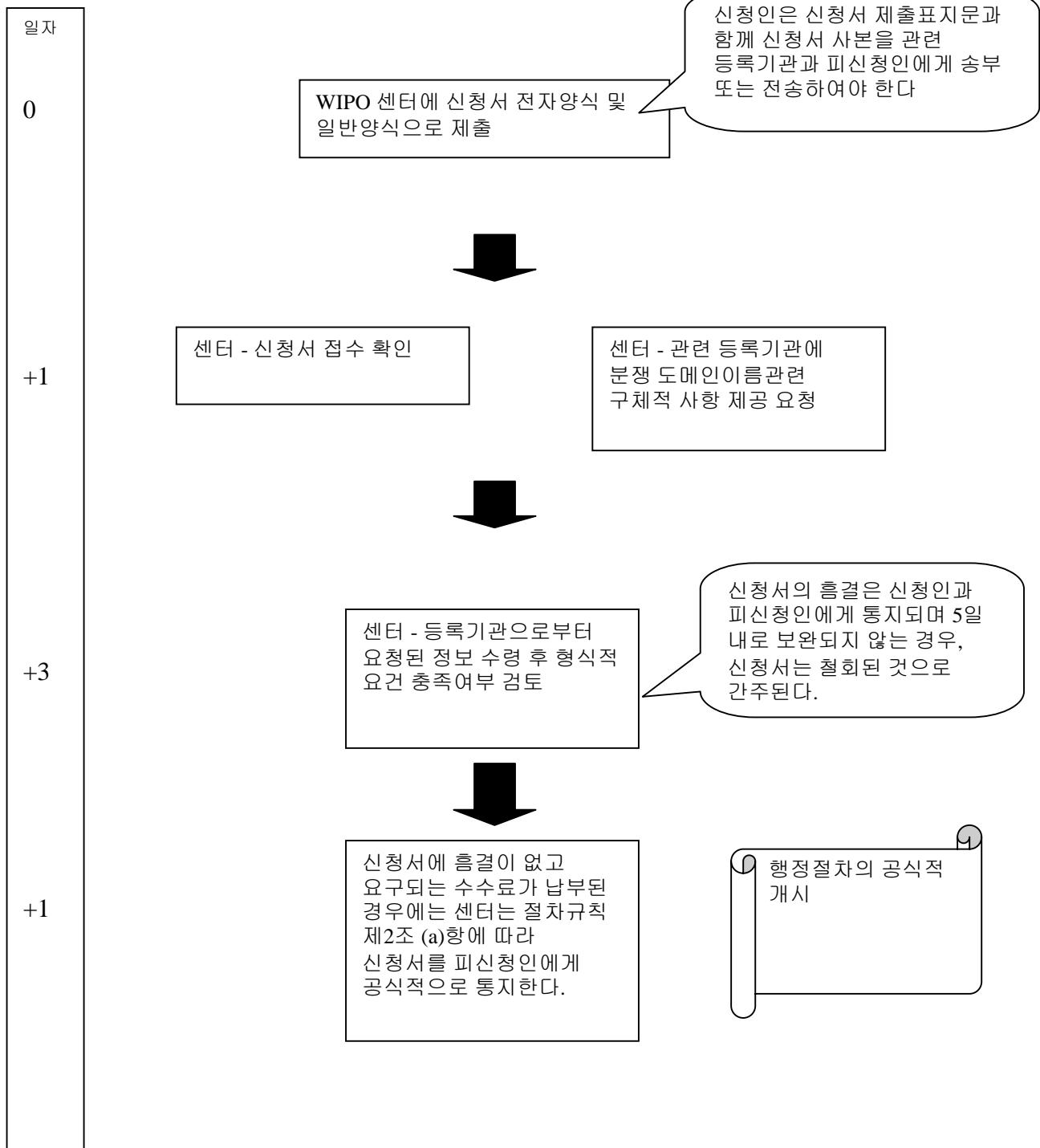




통일도메이니티분쟁해결규정 절차

(1999년 10월 24일에 승인된 UDRP 절차규칙 및 1999년 12월 1일에 발효한 WIPO 보충규칙에 기함)



+20

답변서 마감기일은 행정절차의 공식적 개시일로부터 20일이다.

답변서가 기일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센터는 답변서 미제출을 확인한다; 기일 후에 제출된 답변서의 경우 답변서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행정패널의 재량에 달려있다.

+5
to
+15

센터는 답변서의 접수 또는 답변서의 미제출을 확인한다.

신청인 및 피신청인 모두 1인 패널위원의 행정패널을 선택한 경우, 센터는 센터 명부로부터 패널을 선정한다.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3인의 패널을 선택하는 경우, 센터는 3인 패널위원의 행정패널을 선정한다. 그러한 경우, 센터는 신청인에 의하여 추천된 3 후보 중 1인을, 피신청인에 의하여 추천된 3 후보 중 1인을 선정하도록 노력한다. 3인의 패널의 경우 패널위원장은 당사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선정된다.

+14

패널은 패널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센터는 결정문 수령후 3일 이내에 분쟁당사자, ICANN, 관련 등록기관에 결정문을 통지한다.

규정 제4조 (k)항에 따라,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정의 경우 등록기관은 결정문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이 경과한 후에 결정문을 집행한다. 단, 피신청인이 합의 관할 법원에 불복의 재판을 청구했다는 공식서류를 통지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의 집행을 보류한다. 이러한 경우 등록기관은 다음과 같은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아무런 추가조치를 하지 않는다: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 재판이 기각되었거나 철회되었다는 내용, 또는 기각결정 또는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분쟁도메이이름을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판결의 사본.

+10

결정문은 등록기관에 의하여 집행된다.